

#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 1. 제안사유

시민의 여가선용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지형을 최대 이용한 계획 조경 식재로 인공과 자연의 조화를 이룬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유도하고, 고용증대 창출과 소득향상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 수요를 충족하여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함.

## 2. 주요내용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산81-3번지 일원

◎ 용도지역 변경내용

- 당 초 : 관리지역 (182,602m<sup>2</sup>), 농림지역 (1,002,461m<sup>2</sup>)
- 변 경 : 계획관리지역 (1,185,063m<sup>2</sup>)
- 세부변경내용

□ 관리지역            감    182,602 m<sup>2</sup>

□ 농림지역           감 1,002,461 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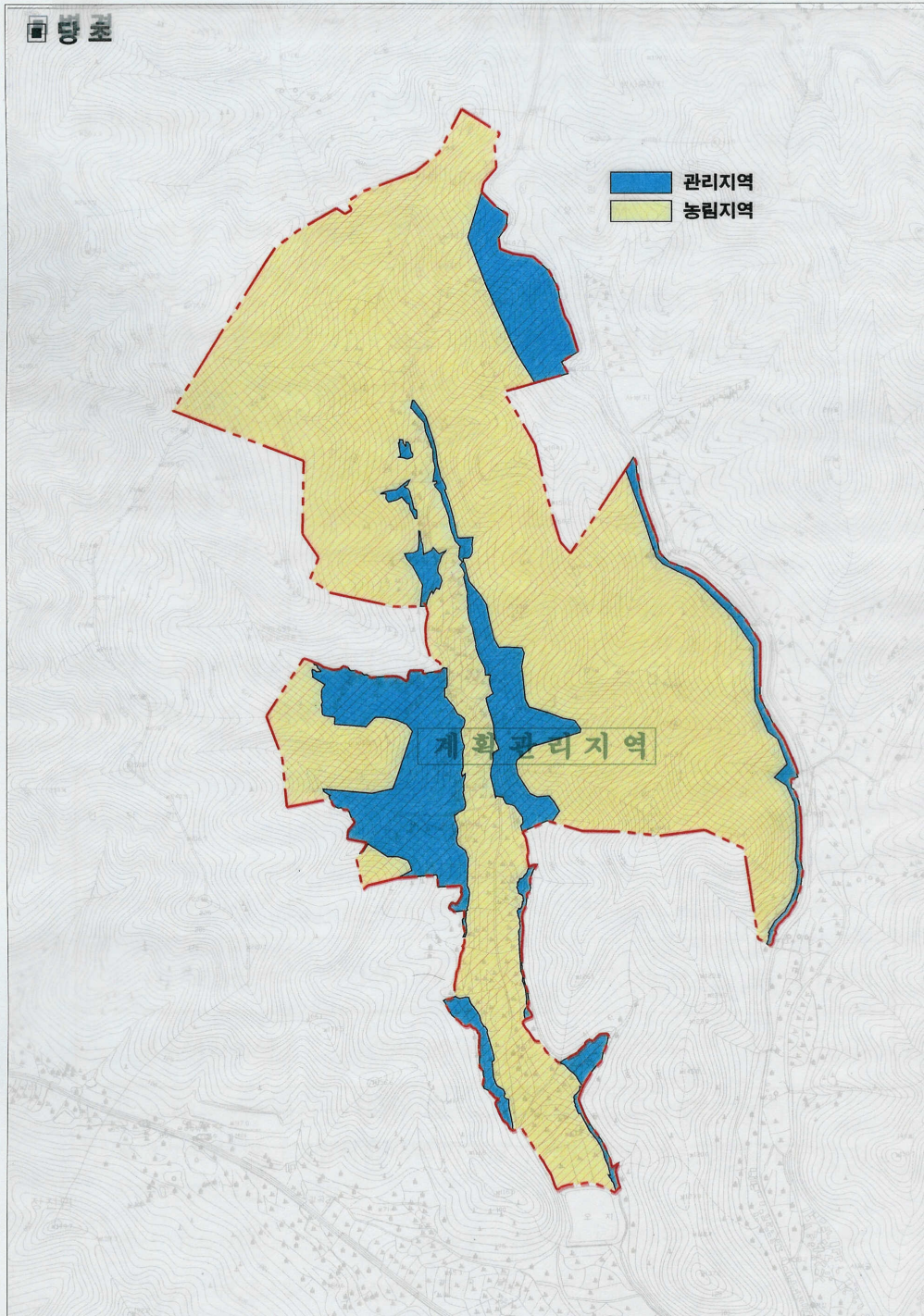
□ 계획관리지역    증 1,185,063 m<sup>2</sup>

◎ 사업기간 : 2006년 ~ 2008년

## 3. 붙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안)

■ 방 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안)

■ 변경



## 의회의견 청취 설명자료

### □ 의견청취사유

시민의 여가선용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지형을 최대 이용한 계획 조경 식재로 인공과 자연의 조화를 이룬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유도하고, 고용증대 창출과 소득향상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 수요를 충족하여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함.

### □ 의견청취내용

#### ◎ 용도지역 변경내용

- 당 초 : 관리지역 (182,602㎡), 농림지역 (1,002,461㎡)
- 변 경 : 계획관리지역 (1,185,063㎡)
- 세부변경내용

| 구 분    | 2월<br>의회 의견제시            | 4월 의회<br>수정의견제시          | 비 고                     |
|--------|--------------------------|--------------------------|-------------------------|
| 관리지역   | 226,384 m <sup>2</sup>   | 182,602 m <sup>2</sup>   | 감 43,782 m <sup>2</sup> |
| 농림지역   | 1,061,906 m <sup>2</sup> | 1,002,461 m <sup>2</sup> | 감 59,445 m <sup>2</sup> |
| 계획관리지역 | 1,288,290 m <sup>2</sup> | 1,185,063 m <sup>2</sup> | 감103,227 m <sup>2</sup> |

※ 금회 수정의견 제시는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계획으로 변경함.

##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① 회원제

1) A=655,163m<sup>2</sup> (198,187평)

2) 18홀, 부대시설

#### ② 대중제

1) A=529,900m<sup>2</sup> (160,295평)

2) 9홀, 부대시설

나. 사업기간 : 2006년 ~ 2008년 12월 31일

다. 개장연도 : 2009년

라. 사업비 : 1,000억원

마. 사업시행주체 : 신구미개발(주)

## ※ 참고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운동장

아. 삭제 <2005.9.8>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화장장

카. 공동묘지

타. 납골시설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 명칭 · 위치 ·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

### 제100조 (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92조제1호·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92조 (운동장의 결정기준)** 운동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 제1종전용주거지역·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3.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집산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평탄한 지형·지대에 설치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시·군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설치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실내운동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경기장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2. 제1종전용주거지역·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